

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(재해위험저수지·댐의 지정 및 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재해위험저수지·댐의 지정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0일

보령시



1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

저수지명	위 치	지정내용		규 모				시 설 관리자	비고 (용도)
		유형	등급	수혜면적 (ha)	총저수량 (천m ³)	제당길이 (m)	제당높이 (m)		
오포	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881-1	재해 위험	D	63	125	166	25	보령시장	농업용
송정	보령시 명천동 53-1	재해 위험	D	2	47	100	50	보령시장	농업용
이천	보령시 명천동 860	재해 위험	D	0.5	0.6	63	50	보령시장	농업용
하만B	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116	재해 위험	D	5	28.5	620	41	보령시장	농업용
금암2	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339	재해 위험	D	9	52	55	73	보령시장	농업용
옥동1	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35	재해 위험	D	40	53	45	78	보령시장	농업용
탑골	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451	재해 위험	D	13	40	50	58	보령시장	농업용

2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

-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

3.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○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※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

4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: 2021. 9. 10.

5. 기타문의 : 보령시청 경제도시국 건설과(041-930-3821)